

영등포구의회
제13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9. 5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8. 29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제정(제안) 이유

-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자전거이용의 안전·편의·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제3조 부터 제4조)
-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 시설의 세부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(안제5조)
-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원 등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, 주차장 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(안제6조 부터 제9조)
- 자전거 정비소·대여소의 설치·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, 학교 등에 자전거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·운영함.
(안제10조 부터 제11조)
- 우리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우리구 소유의 영롱이 자전거 운영근거를 규정함(안제14조 부터 제15조)

관련법규

-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·같은법 시행령

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, 양천구, 금천구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- **안 제3조 부터 제4조까지는**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
- **안 제5조에는**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
- **안 제6조 부터 제9조까지는**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원 등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, 주차장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**안 제10조 부터 제11조까지는** 자전거 정비소, 대여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·학교 등에 자전거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·운영하도록 하였고

- **안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는** 우리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우리구 소유의 영롱이 자전거의 운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9. 5.

보고자 : 이 남 식